

	<b>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규정</b>	규정번호	3-1-19
		제정일자	2019.02.25.
		개정일자	2022.09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혁신지원사업단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(이하 '혁신지원사업'이라 한다)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,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 및 적용) 이 규정은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('22~'24)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적용한다.

## 제2장 대학혁신운영위원회

제3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혁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·의결 기구로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인원은 내부위원 10명 이내, 외부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, 내부 및 외부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
③ 삭제 <2022.09.01.>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사업운영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성과관리팀을 산하에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2.09.01.>

제4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 기능)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①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③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
④ 기타 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 삭제 <2022.09.01.>

제6조(회의)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3장 혁신지원사업단 및 성과관리

제7조(혁신지원사업단)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혁신지원사업단을 직속기관으로 둔다.

② 혁신지원사업단의 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사업실무책임자는 행정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며,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학혁신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④ 삭제 <2022.09.01.>
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혁신지원사업단장이 위촉하며, 내·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 한다.

1. 혁신지원사업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
2. 혁신지원사업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
3.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운용 및 집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혁신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

제9조(사업운영위원회)

- ①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 한다.
  1.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혁신지원사업 운영 및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
  3. 기타 혁신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

[본조신설 2022.09.01.]

제10조(성과관리팀) ① 혁신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산하에 성과관리팀을 둔다.

- ②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내부위원 7인 이내로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, 팀장을 임명한다.
- ③ 성과관리팀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9.01.>
- ④ 성과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  1. 자체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
  2. 자체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개발에 관한 사항
  3.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
  4.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
  5.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

## 제4장 사업비관리

제11조(사업비관리근거)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 감독 기관 및 유관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.

제12조(회계)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한다.

제13조(사업비집행기본원칙)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고한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를 원칙으로 한다.

- ② 혁신지원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.
- ③ 혁신지원사업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.
- ④ 혁신지원사업비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 집행하며, 관련 법률·법령·규칙에 준하여 집행해야 한다.
- ⑤ 운영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집행 할 수 있다.
- ⑥ 혁신지원사업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중점으로,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사항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.

## 제5장 기타

제14조(세부지침) ①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.

- ② 혁신지원사업비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.
- ③ 기타 혁신지원사업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세부지침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9 년 2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3조(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회) 2항과 제7조(혁신지원사업단) 2항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